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종로구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라 도 균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6년 6월 14일

☐ 제 출 자 : 김복동 의원 외 4인

2. 위원회 회부

☐ 회부일자 : 2006년 6월 14일

☐ 상정일자 : 2006년 6월 15일

<제162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3. 개정이유

☐ 지방의회의원에게 종전에 지급하던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아울러 동 법령에 의하여 구성된 종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의정활동비 범위(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원에게 지급할 기준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코자 함.

4. 주요골자

☐ 개정내용이 많아 기존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함

☐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종로구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별표2의 지급액을 지급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안 제3조 ①내지③항)

☐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함(부칙)

5.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2005년 8월 「지방자치법」 제32조에서 지방의회의원에게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그 지급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2006년 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코자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으로 한 것으로서,

☐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종로구의정심의회에서 심의·결정하여 통보된 의정활동비 등(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한도내에서 금액을 별표1, 별표2, 별표3으로 정한 것임.

☐ 개정내용이 많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매년 종로구의정비심 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연도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게 됨에 따라 2006. 4. 26일 통보된 의정비는 2007. 12. 31까지 적용되지만, 2008년 이후 의정활동비에 대해서는 매년 조례를 개정하여야 되므로 추후 개정시 용이하기 위하여 내용 전부를 개정한 것으로 타당함.

☐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정액으로 매월 월정수당이 지급됨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며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에 따라 보험료와 국민연금료를 납부하게 됨.

※ 참 고 사 항

1. 서울시 25개 구청별 월정수당 결정액
2. 월정수당 월 1,445,000원 기준 의원별 월정수당 지급액

6.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5조